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9
----------	-----

발의연월일 : 2022. 4. 13.

발 의 자 : 박은경, 이영환, 전용균,  
이정애, 원병일, 김진희,  
이철영

### 1. 제안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라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관리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 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나. 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와 의료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1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 5. 관련법령

- 가. 「지방자치법」
- 나. 「국민건강증진법」
- 다. 「구강보건법」

##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초등학생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라. 그 밖의 시장이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치과의를 말한다.

3.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초등학생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범위의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3.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치과주치의사업에 따라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해당 초등학생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남양주시 관내 초등학생으로서 매년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할 때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이를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참여기관을 남양주시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②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의료비 신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4. 학교 보건교사
5.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참여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사업대상 : 초등학생 4학년 8,030명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검진비	운영비
321,200천원	16,06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비 40,000원/1인</li> <li style="padding-left: 20px;">40,000원 × 8,030명 = 321,200천원</li> <li style="padding-left: 20px;">(남양주 4,818명, 풍양 3,21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물, 소모품 등 구입</li> <li>○ 협의체 운영</li> </ul>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337	337	337	337	337	337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도비(70%)	236	236	236	236	236	236
	시비(30%)	101	101	101	101	101	101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 정 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해당없음 (비수익사업)							
세 출		337,260	337,260	337,260	337,260	337,260	1,686,300
검진비		321,200	321,200	321,200	321,200	321,200	1,606,000
운영비		16,060	16,060	16,060	16,060	16,060	80,300
재원 조달		337,260	337,260	337,260	337,260	337,260	1,686,300
의존 재원	소 계	236,082	236,082	236,082	236,082	236,082	1,180,410
	보조금	236,082	236,082	236,082	236,082	236,082	1,180,41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1,178	101,178	101,178	101,178	101,178	505,890
	지방세	101,178	101,178	101,178	101,178	101,178	505,89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다. 생략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